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2196 |
|------|------|

제출일자 : 2022. 7. 13.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 대응 및 구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 재설계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행정문화국을 행정안전국으로,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도시안전국을 푸른미래도시국으로, 경제환경국을 문화환경국으로 변경하고, 건제순을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으로 함(안 제3조)
- 나.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통담당관을 신설함(안 제4조)
- 다. 도시안전과를 주민안전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국에 이동 배치하고, 행정안전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5조)
- 라.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청년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과와 함께 기획경제국에 이동 배치하고, 기획경제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6조)
- 마.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아동청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변경하고,

복지가족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7조)

바. 도시재생과를 주거정비과로 변경하여 푸른미래도시국에 이동 배치하고, 푸른미래도시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8조)

사. 문화체육과와 부동산정보과를 문화환경국으로 이동 배치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7. 2. ~ 2022. 7. 7.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3)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과 직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을 둔다.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청사관리·보안, 인사·조직, 직원 교육, 후생복지·노무, 국내·외 교류 및 남북교류, 도·농간 협력,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 동행정·선거, 동청사 관리, 마을사업 지원, 주민·사회단체 참여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협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육기획 및 교육지원, 온종일돌봄 지원, 평생학습,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대책 수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사고 현장 조사 및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민방위,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5. 문서·관인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국·담당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종합 및 주요시책관리, 성과평가, 구민제안, 예산의 편성·배정, 혁신, 공모사업, 법제의 심사, 지방의회, 통계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시책의 총괄, 중소기업 지원·육성, 산업단지관리,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농·축산물 유통, 동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및 고용안정,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공유재산 관리, 공사의 도급·물품구매·지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5. 구 세입총괄 및 부동산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세무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6. 세세의 부과·징수 및 지방세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가족국) 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복지계획,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종합복지상담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 지원,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

법정 복지대상자 관리,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 경로당 지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운영 지원,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보육지원, 어린이집 관리, 출산장려, 1인가구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푸른미래도시국) ① 푸른미래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를 둔다.

② 푸른미래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지원, 재건축, 위법건축물 정비, 공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서남권관문도시 개발,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관리, 산림보호, 도시공원 조성, 친수조경,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착공·준공검사, 공공시설물 설계·시공 및 건축업자 지도·감독

제9조(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부동산 정보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시설, 관광·영상, 도서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장비관리, 재활용, 환경공무원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배출업소 지도·단속, 상수도 및 지하수, 맑은공기 추진,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지적전산, 토지관리, 지적조사·측량, 주소정보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자동차 등록·관리, 교통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운수지도·감독, 주·정차 위반 단속,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토지사용·수용에 따른 보상, 광고물 관리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도로·지하도의 개설 및 유지관리와 가로등·보안등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도·하천유지관리, 수방대책, 빗물펌프장 관리, 안양천 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4조(동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직무)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③ 동장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장 조직관리위원회

제17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구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및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조직관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행정문화국장”을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도시안전국장, 행정문화국장”을 “기획경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시안전국장”을 “푸른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도시안전국장”을 “푸른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국장”을 “푸른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마을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안전도시과장”을 “주민안전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마을자치과장”을 “주민안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의 상황실란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안전도시과장”을 “주민안전과장”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란 중 “마을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마을자치과(3명)”를 “자치행정과(3명)”로 하고, 건설·수송지원반란 중 “도시안전국장”을 “푸른미래도시국장”으로, 홍보지원반란 중 “홍보디지털과장”을 “소통담당관”으로, “홍보디지털과(3명)”를 “소통담당관(3명)”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중 “홍보디지털과장”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 4.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수애 |
| 연 락 처  | 2627 - 1012   |

# 현행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제126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1.12.31.>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구 본청과 직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2019.12.3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12.29., 2019.12.31.)

###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가족국, 기획재정국, 도시안전국, 교통건설국, 행정문화국, 경제환경국을 둔다. <개정 2013.10.31, 2017.12.29, 2018.11.9, 2019.12.31.>

(제목개정 2017.12.29.)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구청장 밑에 민원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12.12.31., 2014.11.14., 2018.11.9>

② 삭제 <2018.11.9>

③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둔다. <신설 2018.11.9.>

제5조(복지가족국) 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를 둔다.<개정 2011.08.12., 2015.5.18., 2018.11.9, 2019.12.31.>

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9., 2019.12.31.>

1. 지역사회 복지계획,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종합복지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8.12, 2015.5.18.>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 지원,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 법정 복지대상자 관리,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8.12, 2015.5.18.>

3. 어르신복지, 경로당 지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운영 지원,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1.08.12., 2015.5.18., 2018.11.9, 2019.12.31.>

4. 여성정책, 보육지원, 어린이집 관리, 출산장려,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8.> <개정 2018.11.9.>

5. 삭제 <2018.11.9.>

6.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청년 정책,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9., 2019.12.31.>

7. 삭제 <2019.12.31.>

(제목개정 2018.11.9., 2019.12.31.)

제6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홍보디지털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4.11.14., 2016.10.14., 2017.12.29, 2018.11.9, 2019.12.31.>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1. 구정의 기획·조정·종합 및 주요시책관리, 예산의 편성·배정, 혁신, 공모사업, 법제의 심사, 지방의회, 통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1.08.12., 2014.11.14., 2019.12.31.>

2. 삭제 <2018.11.9.>

3. 구정의 홍보·보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전산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14., 2018.11.9,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국·공유재산 관리, 공사의 도급·물품구매·지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14.>
6. 구 세입총괄 및 부동산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세무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14.>
7. 제세의 부과·징수 및 지방세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14.>
8. 지적 및 지적전산, 토지관리, 지적조사·측량, 새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7조(도시안전국) ① 도시안전국에 주택과, 안전도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4.11.14., 2019.12.31.>

- ② 도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1. 공동주택지원, 재건축·개발, 위법건축물 정비, 공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1의2. 재난안전대책 수립,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사고 현장 조사 및 지원, 민방위,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
  2. 도시디자인,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3. 건축허가·착공·준공검사, 공공시설물 설계·시공 및 건축업자 지도·감독<개정 2012.12.31>
  4. 공원·녹지관리, 산림보호, 도시공원 조성,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8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개정 2013.10.31., 2015.5.18., 2019.12.31.>

-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10.31, 2019.12.31.>
  1. 삭제 <2019.12.31.>
  2. 교통종합대책, 자동차 등록·관리, 교통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운수지도·감독, 주정차 위반 단속,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토지사용·수용에 따른 보상, 광고물 관리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5. 도로·지하도의 개설 및 유지관리와 가로등·보안등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하천유지관리, 수방대책, 빗물펌프장 관리, 안양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8>

[조명 개정, 2013.10.31][제목개정 2019.12.31.]

제9조(행정문화국)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4.11.14., 2015.5.18., 2018.11.9., 2019.12.31.>

-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9.>
  1. 구청사관리·보안, 인사·조직, 직원 교육, 후생복지·노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1.08.12., 2014.11.14., 2016.10.14., 2018.11.9.>
  2. 삭제 <2018.11.9.>
  3. 동행정·선거, 동청사 관리, 마을사업 지원, 주민·사회단체 참여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협치,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2014.11.14., 2015.5.18., 2016.10.14., 2018.11.9., 2019.12.31.>
  4. 삭제 <2019.12.31.>
  - 4의2. 문화예술·시설, 관광·영상, 도서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9.>
  - 4의3. 교육기획 및 교육지원, 온종일돌봄 지원, 평생학습,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
  5. 문서·관인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14.>
  6. 그 밖에 다른 국·담당관 또는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11.9.]

제9조의2삭

제 <2019.12.31.>

제9조의3(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도시재생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둔다.

-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시책의 총괄, 중소기업 지원·육성, 산업단지관리,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국내교류, 농·축산물 유통, 도·농간 협력, 동물등록·관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량·장비관리, 재활용,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 배출업소 지도·단속, 상수도 및 지하수, 맑은공기 추진,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31.]

###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소에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11.08.12, 2022.1.1.>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9>

###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직무)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신설 2015.5.18.>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장 조직관리위원회 <신설 2019.10.10>

제16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구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0.10]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